

獨逸狩獵法의 成立과정과 背景

金 煉 / 국민대학교 조교수

現 獨逸聯邦共和國(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狩獵法(Jagdrecht)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獨逸사냥歷史에 접해야만 한다. 罗馬帝國時代 前부터 German民族은 사냥民族이라 불리울 만큼 狩獵을 중요시 해왔다. 歷史的 發達過程으로 나누어 四時期로 구분되어진다.

1. 野生鳥獸 自由捕獲時期(Freier Tierfang) 라 불리우고 카알대제 以前부터 확고한 유럽封建社會成立(大략9C) 까지이며 누구든 자기가 살고있는 地域근처로 부터 사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獲獵에 창과 사냥칼을 利用해서 때로는 뒷 使用과 용덩이를 과서 野生動物을 捕獲하는 時期.

2. 文化歷史의으로 유럽中世에 해당하는 時期(Bannforst-Epoche, 9C~16C)이며 現在 保安林(Bannforst)이라 불리우는 森林에서는 野生鳥獸의 自由捕獲이 一般農民에게는 禁止 되었고 마을共同體의 森林에서만 狩獵이 許容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급사냥감(노루, 사슴, 맷돼지)은 자연히 王의 所有物이었다. 이時期의 사냥特徵으로는 매를 가장 많이 利用 하였다.

3. Maximilian황제時代부터(16C초, Luther의 종교개혁) 1848년 3 월혁명까지의 絶對主義의 時代이며 콜목할만한 것은 프

랑스에서 導入된 Parforce-Jagd이다. 즉 말을 타고 Lancier종 사냥개를 利用하여 주로 사슴을 사냥하는 것이 盛行 하였다. 또한 사냥規律時期(Jagdrecht-Epoche)로서 有蹄目의 野生動物이 잘 保育되어 있었다.

4. 1848년 以後부터 사냥이 貴族에게 주어진 封建的인 特權이 없어지고 모든 國民에게 사냥의 期會가 열렸다. 이제까지 자기 사냥지(林地)를 가지고 있더라도 野生動物을 잡지 못했던 지난時代와는 달리 자기 소유지 안에서는 마음대로 사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自由放任主義 영향에 힘입어 무분별한 濫獲으로 野生動物數가 絶滅에 도달하고 사냥꾼 사이에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형사사고로 인해 부득이 새로운 사냥 規則이 요청되어 獨逸帝國이 成立前(1871년) 각 國家(주)마다 개인사냥 區域이 일정량 보다 클 경우는 사냥 權利 執行이 사냥지 所有者에게 부여되지만 적을 경우는 통합하여 共同 사냥區域으로 정해 共同 管理되어졌다. 동시에 野生動物로 인한 畏害보상 역시 사냥지(林地) 所有者 共同 義務이기도 했다. 이를 사냥區域(Bezirk)들이 모여 사냥地域(Kreis) 으로 하나의 管理 經營 單位體로 변모해 가면서



一般市民階級들에게도 賃貸하여 사냥 하게끔 했다. 聯邦國家(주)마다 제각기 規則에 의해 管理되어 오다가 1934년 하나로 統一된 帝國사냥法(Reichsjagdesetzung)이 制定되었다. 이 法에는 아래와 같은 6 하원 칙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 자유롭게사는 動物들의 적정수保存에 대한 의지.
- 모든 野生動物 保護에 대한 義務
- 사냥區域(Bezirk 또는 Revier)이 사냥經營의 生態學的인 근거
- 法에 의해 現存하는 사냥 區域들을 사냥經營 관점에서 통폐합 조절

- 捕獲數가 포함된 연사냥 계획안의 도입.
- 法 시행을 위해 수렵가의 협력
전후 1952년 11월 9일에 制定된 聯邦 猎獵法도 이 6 가지를 기본 바탕으로 새롭게 다듬어졌을 따름이다. 지금 現在 實效적인 聯邦 猎獵法은 그후 두차례의 수정을 거쳐 1976년 9월 28일에 制定(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 된 것이다. 이 聯邦 猎獵法은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Grundgesetz)에 의거하여 사냥에 필수불가결한 테두리 法的 조항만 정해놓고 각주마다 특성있고 세부적인 것은 주狩獵法에 의해 사냥(보육포함)이 실행되고 있다.★

상설수렵장 강원도에

山林廳은 우리나라 陸地에선 최초로 江原道 춘성군 서면 오월리所在 道有林 910 ha(273萬坪)에 常設狩獵場을 設定토록 27日 江原道에 承認했다.

山林廳에 따르면, 江原道 춘성군 서면 오월리所在 강원도 道有林内에 '89 循環狩獵場 收入金 中 602百萬원을 투입하여 山地의 多目的利用과 급증하는 수렵수요의 합리적인 수용 및 수렵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고자 제주도와 거제도에 이어, 陸地에서는 처음으로 常設狩獵場을 설정토록 승인하였다.

이번에 승인된 狩獵場運營은 江原道 直營으로 실행하고 狩獵場 存屬期間은 10年間 (93. 1. 1 – 2002. 12. 31)으로

하되 수렵할 수 있는 기간은 每年 11. 1부터 翌年 2月末까지로 하였으며, 이의 狩獵場運營을 위한 基盤施設로 올해부터 올타리施設, 人工飼育場, 紿餌臺, 狩獵場管理舍等을 3個年計劃으로 狩獵開發 前까지 완료하여 '93년부터 狩獵토록 했으며, 또한 接息密度를 유지토록 하기 위해 꿩, 멧토끼, 고라니, 멧돼지 등 野生鳥獸를 每年 11,000마리以上을 人工飼育 放射하여 放射鳥獸를 대상으로 狩獵토록 하였다.

한편, 山林廳은 이번에 승인한 狩獵場의 운영결과를 앞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公有林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計劃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